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04

발의연월일: 2022. 9. 23.

발 의 자:김정재·태영호·김학용

이종배 · 정동만 · 박성민

이 용・이철규・권명호

박대출 • 이주화 • 한무경

박정하 • 노용호 의위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 관은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용산공원은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공간으로 현재 계획 중인 역사·문화·복합시설 등의 보존·설치에 더하여 보훈과 역사를 아우르는 호국·추모시설로서 용산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할 계획임.

이에 용산 호국보훈공원 관계부처인 국가보훈처장이 용산공원추진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보훈시설이 포함 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하고자 함 (안 제7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

법률 제 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역사·문화·복합시설"을 "역사·보훈·문화· 복합시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4
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1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환경부장관, <u>국토교통</u>	<u>국토교통부</u>
<u>부장관</u> , 국무조정실장 및 서울	<u>장관, 국가보훈처장</u>
특별시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①	제13조(종합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종합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②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역사·문화·복합시설</u> 등의	3. <u>역사·보훈·문화·복합시설</u>
보존 또는 설치의 기본방향	
4. • 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